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라 하며 영문으로는 KYUNG DONG INVEST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차량용 연료 소매업
- (2) 천연가스관련 엔지니어링 사업
- (3) 가스설비의 건설기술 용역업
- (4) 가스냉난방 및 발전설비의 용역업
- (5) 에너지절약사업
- (6) 무역업
- (7)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 (8) 전기업
- (9) 증기 및 온수공급업
- (10)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 (11) 건설업 (설비공사업 포함)
- (12) 창고보관업
- (13) 부동산 임대업
- (14) 해외 자원개발사업 및 판매업
- (15) 태양광 발전시스템 부품 제조업
- (16)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17) 발전업
- (18) 전기공사업
- (19) 도, 소매업
- (20) 집단에너지 공급업 및 구역전기사업
- (21) 에너지진단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 (22) 신재생에너지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 (23)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 (24)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 (25)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 (26) 자금조달 사업
- (27)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서비스업
- (28)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 (29)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 (30)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31)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무대행업
- (32)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 (33)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 (34)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35) 부동산 관리업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dinvest.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구백만주로 한다.

###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제 8 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백이십만 주로 한다.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제 9 조 (주식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공정거래법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자회사를 추가하는 등 지주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소정의 자회사 포함)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 포함), 주식 관련증권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현물출자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당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 11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 12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 13 조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이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사회이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3 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3 장 사 채

###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이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이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이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이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이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이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⑥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총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여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16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17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18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9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이외에 울산광역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2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 ② 주주총회 의장이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3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 제 30 조 (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이사의 선임)

- ①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2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 33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1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더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 35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③ 각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장 및 부회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 36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6 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7 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 제 38 조 (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39 조 (이사회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 제 39 조의2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41 조 (경영임원)**

- ① 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자로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경영임원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③ 경영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 ④ 경영임원의 임기는 제32조를 준용하고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되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1 조의2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약간 명의의 상담역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제 6 장    감 사**

#### **제 41 조의 3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1 조의 4 (감사의 임기 및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1조 3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41 조의 5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41 조의 6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1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7 장 계 산

#### 제 42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

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3 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⑥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 44 조의 2 (주식의 소각)

-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5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6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